

포상금제도	비용기 보증금 환불거부 신고보상금
2021년도 예산	250,000원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필요증거 및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28조의2제4항 제4호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비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한 규정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이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인천서구청 자원순환과(☎032-560-1934)